

의안번호	제 122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발 의 자	민경환 의원 외 9인
발의연월일	2007년 6월 4일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민경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
----------	-----

발의연월일 : 2007. 6. 4.

발의자 : 민경환, 박영웅, 정윤숙
이기동, 박종갑, 이영복
장주성, 이범윤, 이대원
오장세 (10인)

1. 제안이유

WTO, FTA 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농어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 농어업인, 소비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1)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2) 농어업인은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3) 소비자는 농어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

다. 도는 농어업·농촌 지원의 기본원칙을 수립·추진함(안 제7조).

라. 도내 농어업·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안 제8조).

마. 농어업의 소득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촌 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9조 내지 안 제14조).

바.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내지 안 제18조).

사. 농업·농촌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정책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19조 내지 안 제23조)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구성
- (2)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기로 정함.
- (3)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4)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6. “내수면”이라 함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7. “어업”이라 함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8. “어업인”이라 함은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9. “어업경영체”라 함은 이 조례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계, 어업 생산자단체, 어업인 단체를 말한다.
10. “도농교류”라 함은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11. “도농교류협력활동”이라 함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2. “도농자매결연”이라 함은 도시와 주민 또는 기업, 단체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3.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라 함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도는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도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는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도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 소비자단체 등 홍보,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도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는 관할 시·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5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도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써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의 책무) 도내 소비자는 농어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분야별 지원

제7조(기본원칙) 도는 농어업·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8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도내 농어업·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업이며,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도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사업
6.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8.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9.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사업
 10.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사업
 11.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7.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0.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12.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3.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4.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내수면양식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15.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6.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7. 농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8.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9. 산림의 조성·육성·관리·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21.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는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도농 교류 촉진) 도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창업지원) 도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재해지원

제14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5. 어업인·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제15조(지원신청) ①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이 조례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관할권역 내 농어업인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시장·군수가 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도에 설치된 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7조(지원금 교부) ①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당해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②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사후관리) ①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농어업·농촌정책자문위원회

제19조(농어업·농촌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업·농촌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3.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4. 도농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농정본부장, 농업기술원장, 농협중앙회충북지역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도 단위 농업인·어업인·소비자 단체의 임원
2.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및 선도 농어업인
3. 농업·어업·지역개발·복지 분야 전문가
4.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5.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당연직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자문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 또는 회피 시킬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2. 축산업·어업 정책 분과위원회
3. 임업정책 분과위원회
4. 농촌개발 및 복지정책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등) 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취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촉진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2.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촉진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폐업지원)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구매 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재해의 예방·피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지원의 조치를 받은 농가 및 어가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